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관세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KPMG 이전가격/관세본부 고문 영입

지난 11월 KPMG 이전가격/관세본부에 이전가격부문 및 관세부문 각 1분씩의 고문이 영입되어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이용근 고문 (Gus Lee) – 이전가격



1. 주요 학력

- Washington Lee High School, College of William and Mary 경제학 학사
-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2. 경력 사항

- University of Chicago, Population Research Center/Chapin Hall Research (1992.05~1995.06)
- Chicago Partners LLC, Economic Analysis Consultant (1995.07~1996.08)
- KPMG LLP, USA, Economic and Valuation Services Partner (1996.09~2020.09)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본부

14 December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신현은 고문 - 관세



1. 주요 학력

- 세무대 (2회)
- 중앙대 경제학 학사/석사
- 관세사

2. 경력 사항

-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
- 관세청 통관기획과, 수출입물류과
- 속초세관장(2015.07)
- 광주세관 운영지원과장
- 평택직할세관장(2018.03)
- 관세평가분류원장(2019.03)

2. OECD Update

국세청장, OECD 국세청장 회의 참석...코로나 대응·디지털 경제 논의 (조세금융신문, 2020.12.08)

- 국세청이 지난 7~8일 열린 제13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해 주요국 청장들과 코로나 시대 과세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고 8일 밝혔습니다. OECD 국세청장회의는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OECD 산하 정례회의체(18개월 주기)로서 미·중·일 등 53개국 국세청장과 IMF·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과세문제,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코로나19로 인한 세정환경 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관련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정상가격 사전승인(APA) 제도 개선, 다자간 APA·상호합의절차(MAP) 활용 제고, 시범 운영 중이던 ICAP(International Compliance Assurance Program)을 공식 FTA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ICAP란 국가별 보고서 및 기타자료를 이용해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여러 과세당국과 기업이 함께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참가국들은 과세행정의 디지털화 등 개도국 지원 관련 내년 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김태주 상무(관세)
(Tel: 02-2112-7448)



김현만 상무(관세)
(Tel: 02-2112-7542)

- 국세청은 OECD만이 아니라 아시아 국세청장회의, 유럽 조세행정 협의기구, 범 미주 조세행정 협의기구 등 세정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각국 과세당국과의 교류 및 세정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EPS Action 14: Mak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 2020 Review

1. Introduction

BEPS Action 14의 최소기준은 이미 상호합의절차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끼쳤고, 과거 상호합의절차 통계치 및 상호평가에 따르면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최소기준에 추가되거나 기존 모범사례를 최소기준으로 상향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8가지 제안이 검토됨

2. Proposals to strengthen the Minimum Standard

Proposal 1 : 쌍방 APA 활성화

지금까지 수행된 상호평가방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참여국들이 이미 쌍방 APA 제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참여국의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은 OECD모델 조세협약 제25조 제3항에 의거한 조약 조항의 권한만을 기반으로 APA를 체결하는 반면, 일부 조세관할권에서는 공식적인 APA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세부 규칙을 명시했습니다.

Proposal 2 : 국제조세 관련 세무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정 제공 확대

BEPS Action 14는 국제적인 조세조약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초점은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는 것이지만, 애초에 상호합의절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무조사 담당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제공은 BEPS Action 14에 따른 모범사례이며, 이를 통해 세무조사 담당자의 효율성 증대, 상호합의절차로 이어지는 과세조정 사례 감소, 이중과세 문제 최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Proposal 3 : 적격한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상호합의절차 신청에 필요한 표준화된 필수서류 정립

상호합의절차 신청 가능여부 정립 (Defining "access to MAP")

현재의 BEPS Action 14는 상호합의절차가 신청 가능한 상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i) 이전가격 사례, (ii) 조세조약 및 국내 남용금지 조항 관련 사항, (iii) 세무조사를 통해 확정된 과세 사례, (iv) 납세자가 관할권의 상호합의절차 지침에 따라 필수 정보 및 문서를 제출한 경우

상호평가방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상호합의절차의 신청이 가능해야 하는 상황에도 부적절하게 거부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고,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신청권한을 부여하는 상기 4가지 조건은 모호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접근과 관련하여 명확성을 제공하고 조약 참가국 간의 일관된 접근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BEPS Action 14에 추가적인 조건을 정의하거나 각 관할권의 상호합의절차 지침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 신청에 필요한 최소 정보에 대한 정립

각 조세관할권마다 정보 요구사항이 다를 경우 상호합의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수 있으며, 권한 있는 당국 중 하나가 납세자의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개시를 거부하는 반면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은 개시를 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보다 균일하고 투명성을 제공하고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각 조세관할권 별 다른 상충되는 의견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필요한 규격화된 표준 목록을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roposal 4 : 체약국은 상호합의절차 사안이 계류 중인 기간에 대하여 세액의 징수유예

일반적으로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소득에 대한 조정이 한 관할구역에서 이루어진 경우 동일 소득항목은 이미 다른 관할구역에서 과세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다른 관할권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이는 납세자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절차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당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허용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를 유예하는 경우 관할 당국이 이미 징수된 세금을 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발생하는 편견없이 성실하게 상호합의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Proposal 5 : 상호합의절차 결과에 따른 가산금과 가산세 일치화

과세조정의 결과로 부과되는 가산금 및 가산세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상호합의절차를 개시하여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합의 이행일까지는 분쟁이 되는 과세금액에 대한 이자가 누적되며, 이는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이 됩니다.

현재 참가국들은 이러한 가산금 및 가산세를 상호합의절차 최종 결과와 일치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중과세와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납세자에게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산금과 가산세를 상호합의절차 결과에 합리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쟁점 과세금액에서 발생하는 가산금 및 가산세를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결정된 과세금액 한도 내로 제한한다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공정한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Proposal 6 : 모든 MAP 합의/체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체제 도입

과세당국은 Domestic time limits를 불구하고 모든 MAP 합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Peer review 결과 과세당국의 1/3은 OECD Model Tax Convention Article 25(2) 에 따라 "Domestic time limits 과 관계없이 MAP 합의/체결이 가능하다" 라는 조항을 조세조약에 포함하지 않아, MAP 합의/체결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최소 기준은 조세조약에 위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과세당국이 이전가격조정을 할 수 있는 기한 관련 조항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함. 이는 Domestic time limits 이 만료되어 MAP을 통해 더 이상 이중과세를 완화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Proposal 7 : 신고한 과세연도와 관련하여 반복되는 이슈를 MAP을 통해 다년에 걸쳐 해결

- 과세당국의 소득조정은 과거 과세연도 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슈일 수 있음. 납세자가 다른 과세연도에 반복되는 이슈와 관련하여 MAP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MAP 절차가 도입되면 중복 MAP 신청을 방지하고 과세당국이 가진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Proposal 8 : 상호합의 절차를 통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보장하고자 MAP 중재 또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도입

- MAP 중재 방안(MAP arbitration)을 도입하면 해결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해결되는 MAP 케이스를 줄일 수 있고 또한 보류중인 MAP 케이스를 보다 적시에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Minimum Standard는 MAP 중재 방안에 대한 과세당국 입장에 대해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함. 여러 과세당국이 MAP의 효율성과 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MAP 중재 방안 채택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고, 그 외 여러 과세당국은 MAP 중재가 헌법 및 주권과 관련된 문제 제기과 비용 및 자원적 제약을 포함한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최소 기준을 지지하지 않음.

3. 국제조세 Update

국제조세 최신 예규/판례 : 해외주주사에 지급한 광고비가 상표권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조심 2020 서 1317, 2020.11.02)

- 청구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판매법인들은 해외주주사가 제공한 광고 및 판촉물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광고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실제 발생한 비용 중 해외주주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배부대상 비용을 국가별 매출액 비율로 부담하고 있음
-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광고비는 해외주주사가 광고활동과 관련된 독립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쟁점광고비를 해외주주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가 아닌 광고·판촉활동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상표권의 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판단 (조심 2020 중 1507, 2020.10.06)

- 청구법인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받은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히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등록한 특허권의 개수가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등록한 특허권 전체의 개수에서 차지하는 각 월별비율로 안분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계산하여 2014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로부터 지급받은 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중 약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 제기
- 한·미 조세조약은 사용료에 대하여 과세권 배분기준으로 사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사용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지국에 대한 판단기준은 국내세법에 따라야 함.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허권 등의 국내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사용지를 국내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함.

4.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Malaysia: Transfer pricing measures included in Finance Bill

2020

2020년 말레이시아 이전가격 세법 개정안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12/tnf-malaysia-transfer-pricing-measures-finance-bill-2020.html>

2020년 말레이시아 재정 법안은 이전가격 법률과 관련된 1967년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이전가격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신설 (신규 조항 113B):** 현재 말레이시아 세법에는 납세자가 적시(통상적으로 과세당국의 서면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전가격 동기화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없으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전가격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 거래 구조에 대한 과세당국의 재해석 권한 조항(Section 140A):** 납세자가 주장하는 특수관계자 거래 구조를 부인하고 이를 재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부여하는 2012년 이전가격 소득세 규정 8항(Rule 8)이 세법 조항(section 140A)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추징금 조항(Section 140A):** 현행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 조정에 따라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이전가격 조정이 발생해도 추가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새로 제안된 세법조항은 추가 납부 세액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세무조사를 통해 이전가격 조정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청이 해당 금액의 5%이내에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Australia: Due date for country-by-country reports deferred to 29 January 2021

호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기한의 연장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12/tnf-australia-due-date-for-country-by-country-reports-deferred-to-29-january-2021.html>

호주 과세당국(ATO)은 글로벌 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법인들은 연장된 제출 기한인 2021년 1월 29일까지 아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 개별기업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ATO는 이번 제출 기한의 연장이 보고서의 제출 일자에 대해서만 연장된 것이며, 세액 납부 기한은 기존과 동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5. 관세 이슈 Update

브렉시트 이후 변화 및 한영 FTA 활용 안내 세미나

한-영 FTA 개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를 대비해 한국과 영국 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2019년 6월 10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였으며, 양국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 유지를 위해 한-영 FTA에 한-EU FTA 양허(관세율)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브렉시트 이후 시 발효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 발효가 예상됩니다. 본래 한-EU 자유 무역 협정에 의거 한국과 영국은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으나,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무관세 수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진행되었으며,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서명한 국가가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한-영 FTA 발효에 따른 주요 내용

- (상품 관세) 기본적으로 상품의 관세는 한-EU FTA의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그 외 예외적 조치는 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율할 예정입니다.
 - 공산품 및 임산물에 대해서는 한-EU FTA에서의 양허 수준과 동일하게 전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됩니다.
 - 농산물 및 수산물의 경우 일부 물품에 한정하여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민감품목에 대해 세이프가드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하였습니다.
- (원산지)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하고, EU국 경유를 직접 운송으로 인정하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 (EU산 원재료의 역내산 인정) 양국 기업이 EU 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생산·공급망의 조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간 한시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EU 경우 직접운송 인정) 원산지상품이 체약당사국 이외 제3국을 경유하여 이동할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이 불가하나 EU 경유 시에도 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운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